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전번호 제2013 - 29 - 074호 (사건번호 : 201305조사008)

안 건 명 SK텔레콤(주)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SK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대표이사 하성민

의결연월일 2013. 7. 18.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금 액 : 36,460,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1.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2,711만명으로 전체 시장의 50.2%(‘13.5월말 기준)를, 매출액은 12조 2,990억원(‘12.12월말 기준)으로 52.5%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명, 십억원)

구 분	SKT	K T	LGU ⁺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27,106 (50.2)	16,425 (30.4)	10,478 (19.4)	54,009 (100)
매 출 액 (점유율, %)	12,299 (52.5)	6,775 (28.9)	4,356 (18.6)	23,430 (100)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2012년 영업보고서)

2.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가.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7)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 < 관련 조항 >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조금 지급범위 확대('06.3.27 ~ '08.3.27)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발생시켰다. 이에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 관련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SKT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

※ S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 제36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 가능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4회('10년, '11년, '12년, '13.3월)에 걸쳐 이통 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위법하다고 판단³⁾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0. 9.24일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하였고, '11.9.19일에는 '11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10년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36.7억원의 과징금(SKT 68.6억원, KT 36.6억원, LGU+ 31.5억원)을 부과하였으며, '12.12.24일에는 SKT 22일, KT 20일, LGU+ 24일의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119억원의 과징금(SKT 68.9억원, KT 28.5억원, LGU+ 21.5억원)을 부과하였고, '13.3.14일에는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53.1억원의 과징금(SKT 31.4억원, KT 16.1억원, LGU+ 5.6억원)을 부과하였다.

3. 이동전화 시장현황

'12.12.24일 제재조치에 따른 신규모집 금지기간('13.1.7~3.13) 중 시장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LGU+의 금지기간 중에는 2.8만건, SKT 때는 2.5만건, KT 때는 3.1만건으로 과열기준(일평균 2.4만건)을 모두 초과하였다.

<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3)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13.3.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시장이 안정적이었으나 4.15일부터 과열기준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주말을 낀 4.22일에 4.6만건, 5.6일에 4.2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 '13.3.14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한편, '13.1.7일부터 5월말까지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⁴⁾에 접수되어 포상금이 지급된 총 889건을 살펴보면, 온라인 시장에서 1인당 623천원의 높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운영현황 >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접수건수	포상건수	평균 포상금	평균 보조금
SKT	876	372	785	634
KT	918	400	771	627
LGU+	282	117	677	576
전 체	2,076	889	764	623

4) '13.1.7일부터 이통3사 합의에 의해 이동전화 온라인시장에서의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를 근절하고자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으로 시행

II. 사실조사 결과

1.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은 '13.5.8일부터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피심인의 본사 및 전국 주요권역 유통망을 현장조사 하였다. '13.1.8~3.13일 및 '13.4.22~5.7일 기간(이하 "조사대상 기간")의 신규·기변 가입 건에 대해 영업정책·보조금 지급 수준·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현장 수집자료, 전산자료, 대리점 단가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수시로 마케팅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전파하였으며, 지역본부(지점 포함)는 단말기별로 자체 리베이트 정책을 추가하여 대리점에 정책서를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자체 펀딩능력을 고려한 최종 단가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사적 계약 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배포하였으며,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판매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목표달성과 번호이동 가입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왔으며, 특히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과열을 유발하였다.

2.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

가.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13.1.8~3.13)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신규 가입 65,526건(번호이동 44,387건, 일반 21,139건)⁵⁾과 기기변경 가입 42,621건 등 총 108,147건을 분석⁶⁾하였으며, 단말기는 총 46개 기종이었다.

5) 신규 가입자는 일반(010)과 번호이동(MNP : Mobile Number Portability)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음

6) 단말기 구매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중고폰 개통건과 선불요금제 가입건, 태블릿 PC 및 무선인터넷 모뎀 가입건 그리고 피쳐폰(실버폰) 개통건 및 2G 서비스 가입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구 분	1.8~1.30	1.31~2.21	2.22~3.13	합 계
신 규	31,988	-	33,538	65,526
- 번호동	21,345	-	23,042	44,387
- 일 반	10,643	-	10,496	21,139
기기변경	6,827	29,650	6,144	42,621
합 계	38,815	29,650	39,682	108,147

※ 조사대상 기간은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13.1.8~3.13일(LGU+ '13.1.8~1.30일, SKT '13.1.31~2.21일, KT '13.2.22~3.13일)로, 평일 개통 기준으로 분석

나. 기간별 보조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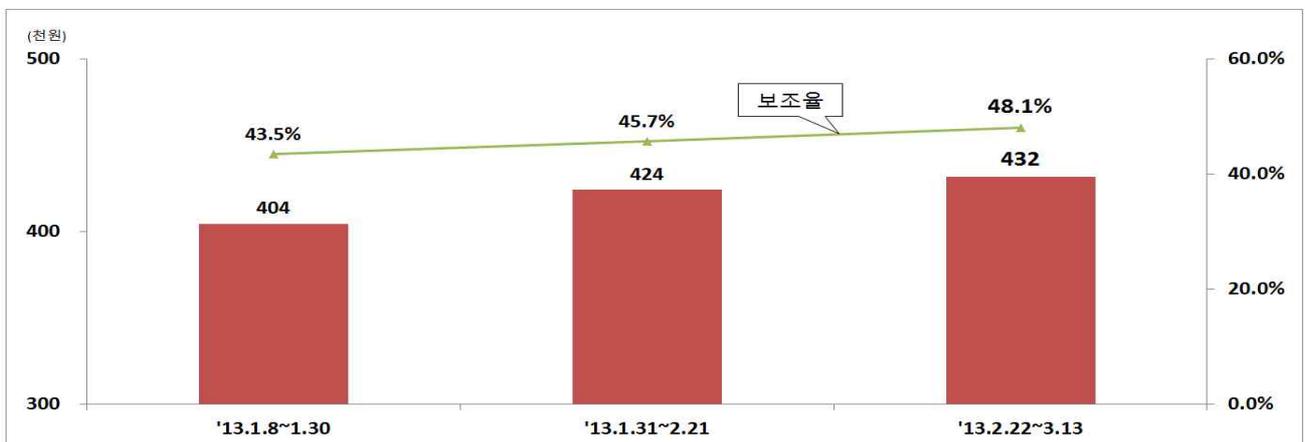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한 가입자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420천원이며, 평균 출고가는 918천원으로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이하 '보조율')은 평균 45.7%였다.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1.8~1.30	1.31~2.21	2.22~3.13	전체 평균
출고가	931	927	899	918
보조금	404	424	432	420
보조율	43.5	45.7	48.1	45.7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다.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437천원이며,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번호이동 가입자는 평균 보조금을 471천원 지원한 반면 일반 가입자는 364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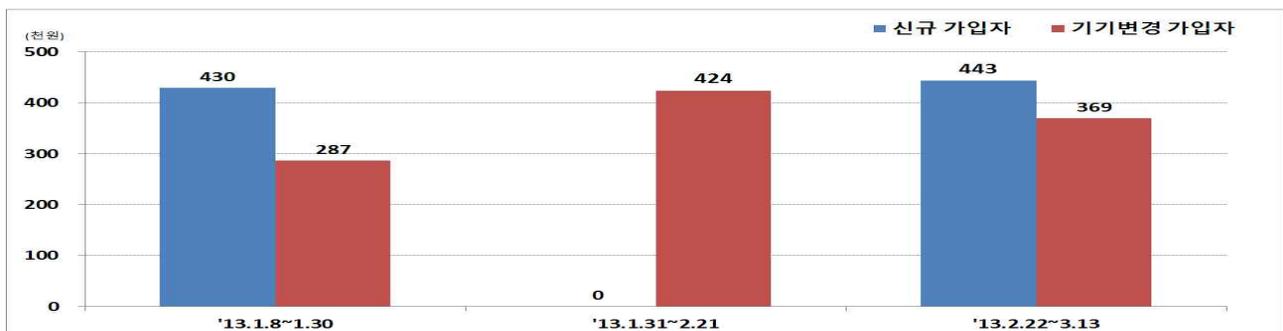
기기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94천원을 보였으나 자사 신규모집 금지기간('13.1.31~2.21) 중에는 평균 보조금이 424천원으로 기존 가입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천원)

구분	1.8~1.30	1.31~2.21	2.22~3.13	전체 평균
신규(A)	430	-	443	437
- 번호이동	459	-	482	471
- 일반	370	-	358	364
기기변경(B)	287	424	369	394
보조금차이(A-B)	143	-	74	42

※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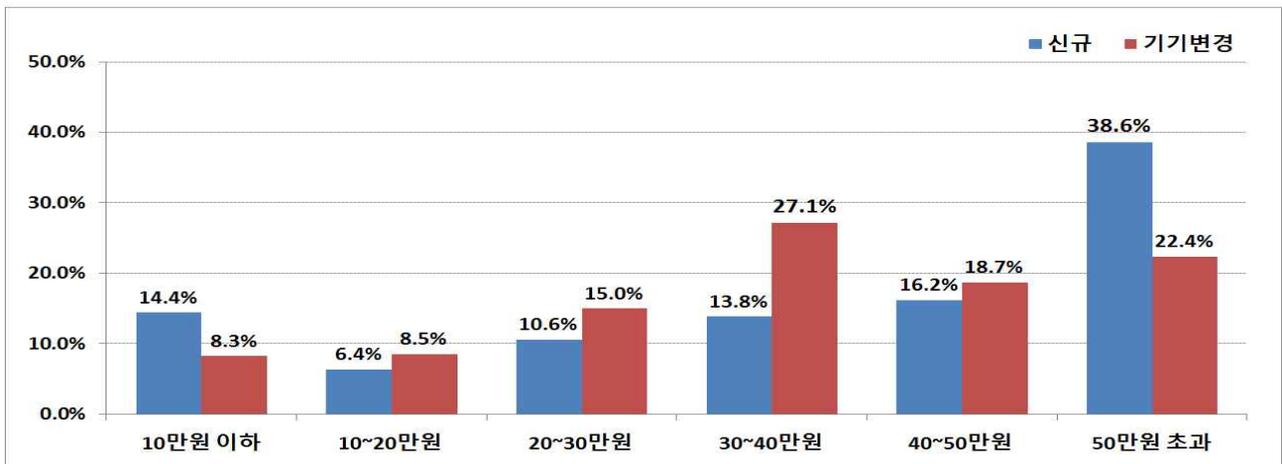


보조금 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68.6%를 차지하고 기기변경 가입자는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5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38.6%인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22.4%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별이 크게 나타났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점유율)	9,449 (14.4)	4,172 (6.4)	6,948 (10.6)	9,063 (13.8)	10,592 (16.2)	25,302 (38.6)
기기변경 (점유율)	3,522 (8.3)	3,630 (8.5)	6,394 (15.0)	11,561 (27.1)	7,974 (18.7)	9,540 (22.4)



라. 연령대별 보조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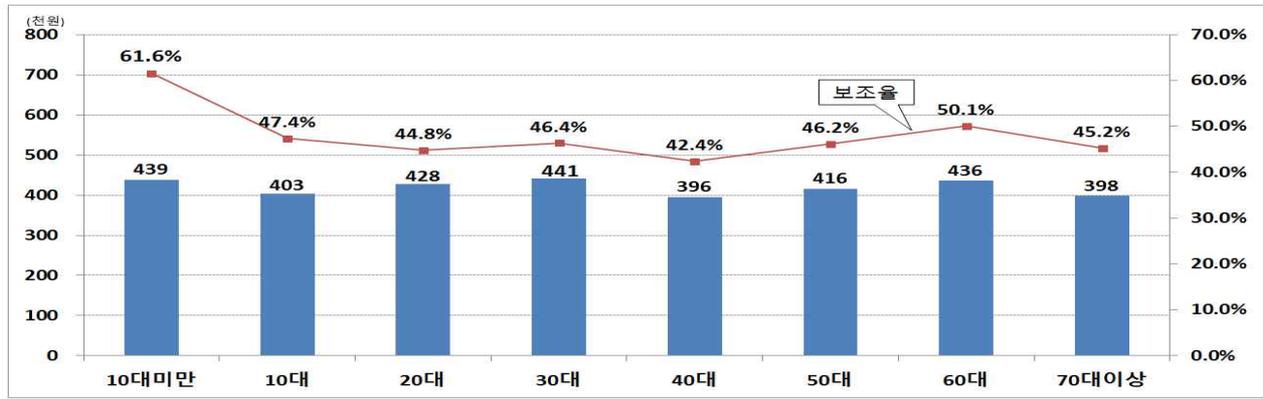
피심인의 가입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96천원으로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30대 가입자는 441천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 외 연령대별 보조금 수준은 398~439천원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 연령대별 보조금 지급 수준 및 비율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출고가	713	850	955	951	934	901	871	880
보조금	439	403	428	441	396	416	436	398
보조율	61.6	47.4	44.8	46.4	42.4	46.2	50.1	45.2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연령대별 평균 금액임



마. 동일기종 단말기 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주요 6개 LTE 단말기 기종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동일기종의 단말기 간에도 시기와 가입형태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다르며, 같은 날짜에도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 폭이 크게 변동하여 동일기종 간에도 보조금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주요 LTE 단말기에 대한 기간별 보조금 추이를 보면, 갤럭시S3 · 갤럭시노트2 등 전반적으로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체로 자사 신규모집 금지 기간에 보조금이 높게 지급되었으며 기간별로도 차별이 나타났다.

< 단말기 기종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팻네임	1.8~1.30	1.31~2.21	2.22~3.13	평균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361	430	461	399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322	394	359	304
LG-F180S	옵티머스G	574	577	416	499
LG-F240S	옵티머스G프로	-	362	339	311
IM-A860S	베가NO.6	-	362	297	293
IM-A850S	베가R3	523	549	445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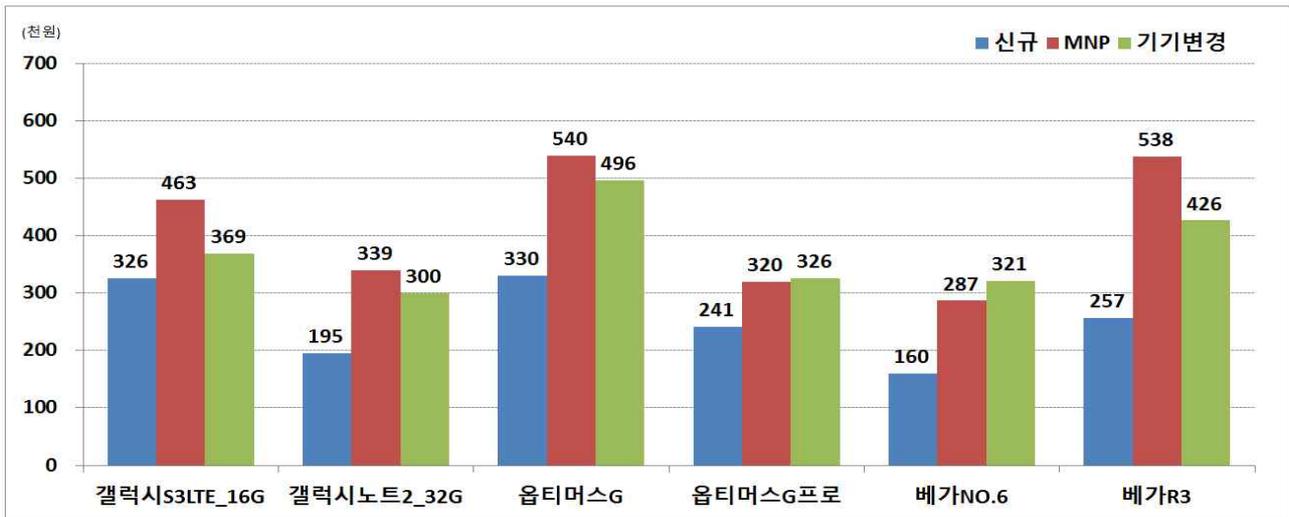
※ 기종별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또한 주요 단말기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높게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갤럭시노트2·옵티머스G·베가R3 기종의 경우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 간 차별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가입형태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팻네임	출고가	신규		기기변경
			010신규	MNP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908	326	463	369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1,089	195	339	300
LG-F180S	옵티머스G	1,000	330	540	496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68	241	320	326
IM-A860S	베가NO.6	849	160	287	321
IM-A850S	베가R3	1,000	257	538	426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가입자 간에도 보조금 지원의 가입자 간 차별이 심하였는데, 갤럭시노트2의 경우 최대 1,129천원에서 최소 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옵티머스G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보조율도 49.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폰네임	출고가	보조금			
			평균	보조율	최대	최소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908	399	44.0	1,001	0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1,089	304	27.9	1,129	0
LG-F180S	옵티머스G	1,000	499	49.9	1,040	0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68	311	32.2	1,008	0
IM-A860S	베가NO.6	849	293	34.5	889	0
IM-A850S	베가F3	1,000	463	46.3	1,04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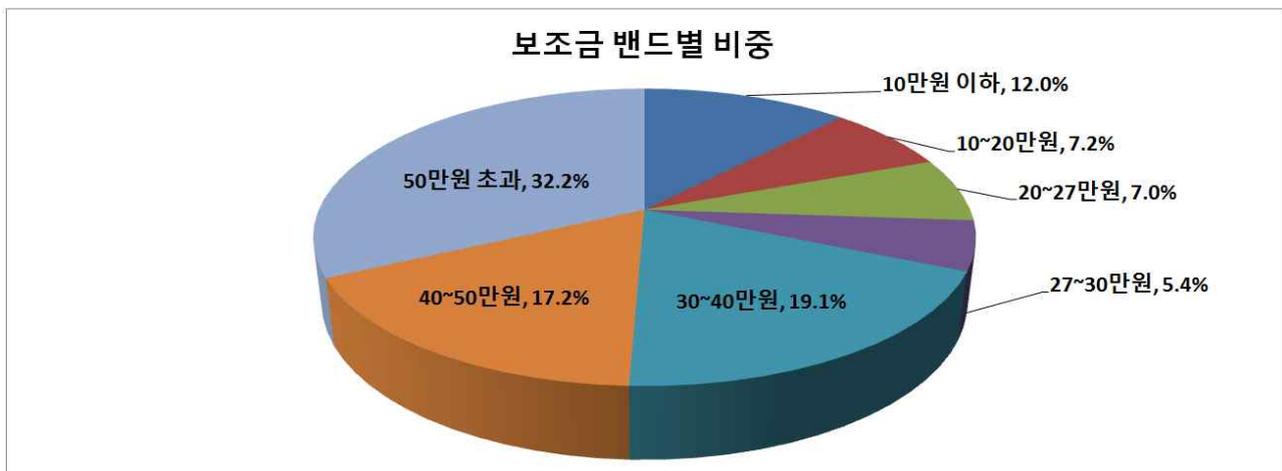
바.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3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68.5%인데 반해 1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12.0%로 가입자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였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구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27만원	27~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합계
가입자	12,971	7,802	7,525	5,817	20,624	18,566	34,842	108,147
비중	12.0%	7.2%	7.0%	5.4%	19.1%	17.2%	32.2%	100.0%



3. 과열기간('13.4.22~5.7일)

가.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13.4.22~5.7)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신규 가입 18,501건(번호이동 11,733건, 일반 6,768건)과 기기변경 가입 8,244건 등 총 26,745건을 분석)하였으며, 단말기는 총 46개 기종이었다.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구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합계
신규	4,192	836	504	484	823	1,965	938	860	952	785	4,320	1,842	18,501
- 번호이동	3,099	592	253	250	375	1,088	451	487	524	425	2,875	1,314	11,733
- 일반	1,093	244	251	234	448	877	487	373	428	360	1,445	528	6,768
기기변경	543	249	241	229	816	1,277	523	1,090	700	694	1,314	568	8,244
합계	4,735	1,085	745	713	1,639	3,242	1,461	1,950	1,652	1,479	5,634	2,410	26,745

※ 조사대상 기간은 과열기간으로 판단한 '13.4.22~5.7일로, 평일 개통 기준으로 분석

나. 기간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한 가입자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297천원이며, 평균 출고가는 808천원으로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은 평균 36.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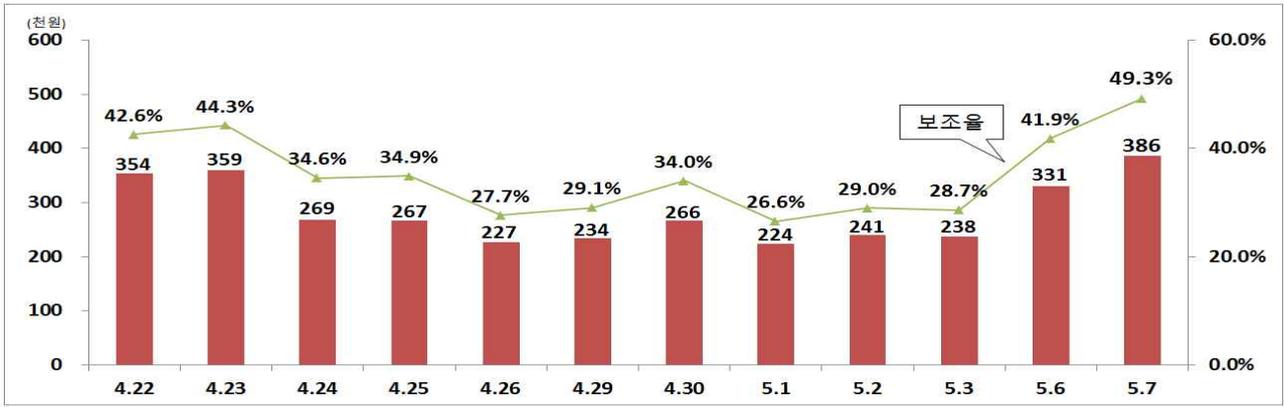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전체 평균
출고가	831	811	777	765	820	803	783	842	831	829	789	783	808
평균보조금	354	359	269	267	227	234	266	224	241	238	331	386	297
(보조율)	42.6	44.3	34.6	34.9	27.7	29.1	34.0	26.6	29.0	28.7	41.9	49.3	36.8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7) 과열기간('13.4.22~5.7)의 전체 분석대상 건수 26,745건 중 5,899건(22.0%)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보조금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 지급자료와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다.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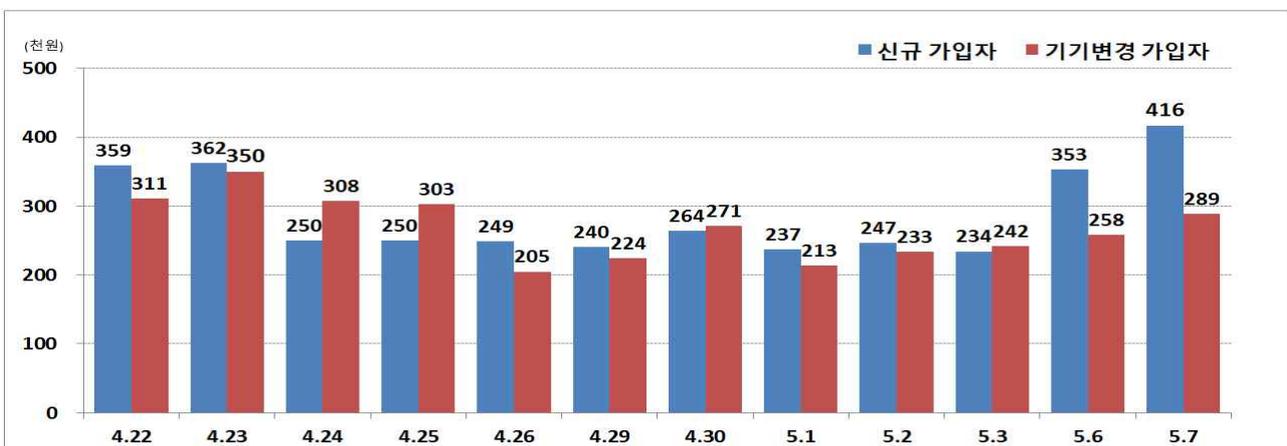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19천원이며,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변호이동 가입자는 평균 보조금을 347천원을 지원한 반면 일반 가입자는 270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천원)

구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전체 평균
신규(A)	359	362	250	250	249	240	264	237	247	234	353	416	319
- 변호이동	374	406	239	258	219	234	252	245	250	231	391	472	347
- 일반	319	256	261	242	274	248	275	228	242	238	276	276	270
기기변경(B)	311	350	308	303	205	224	271	213	233	242	258	289	250
보조금차이(A-B)	48	12	58	53	44	17	7	24	13	8	95	127	69

※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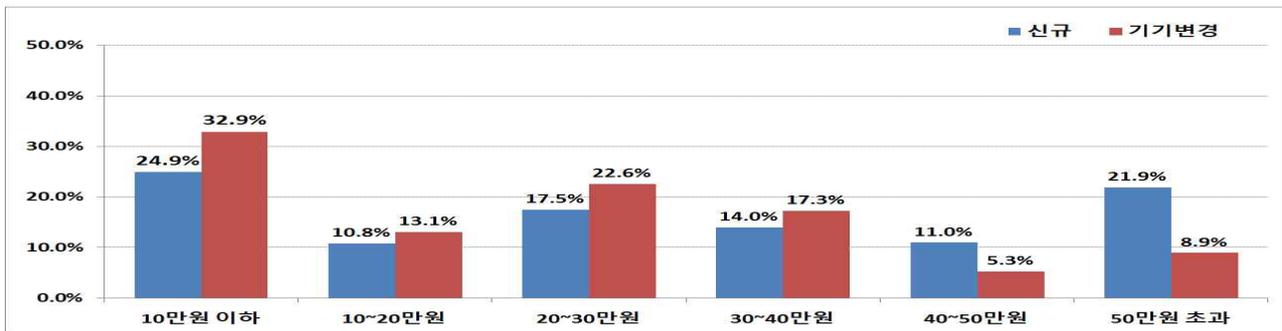


보조금 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46.9%를 차지하고 기기변경 가입자는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5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21.9%인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8.9%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별이 크게 나타났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

구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점유율)	4,606 (24.9)	1,996 (10.8)	3,237 (17.5)	2,587 (14.0)	2,028 (11.0)	4,047 (21.9)
기기변경 (점유율)	2,710 (32.9)	1,077 (13.1)	1,860 (22.6)	1,425 (17.3)	435 (5.3)	737 (8.9)



라. 연령대별 보조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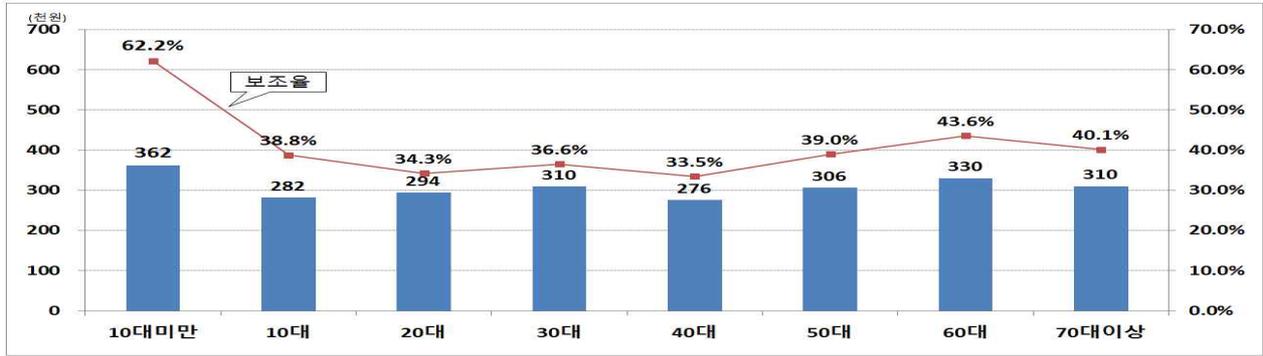
피심인의 가입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276천원으로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10대 미만 가입자는 362천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 외 연령대별 보조금 수준은 282~330천원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 연령대별 보조금 지급 수준 및 비율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출고가	582	726	858	847	823	784	756	773
보조금	362	282	294	310	276	306	330	310
보조율	62.2	38.8	34.3	36.6	33.5	39.0	43.6	40.1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연령대별 평균 금액임



마. 동일기종 단말기 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주요 6개 LTE 단말기 기종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동일기종의 단말기 간에도 시기와 가입형태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다르며, 같은 날짜에도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 폭이 크게 변동하여 동일기종 간에도 보조금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주요 LTE 단말기에 대한 일별 보조금 추이를 보면, 갤럭시S3·옵티머스G프로는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과열 기간 중 주말 직후인 '13.4.22~23일 및 '13.5.6~7일에 보조금이 높게 지급되었으며 일별로도 차별의 정도가 심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 단말기 기종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팻네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평균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382	466	259	252	286	272	242	256	239	246	334	323	322
SHV-E230S_32G	갤럭시노트2_32G	334	360	260	243	266	265	288	261	266	268	297	272	268
LG-F180S	옵티머스G	293	235	142	111	109	201	345	188	225	190	303	184	229
LG-F240S	옵티머스G프로	401	281	258	199	280	256	252	278	251	232	279	268	288
IM-A860S	베가NO.6	326	298	211	241	223	215	251	232	276	216	253	277	254
IM-A850S	베가R3	205	-	-	369	683	305	16	-	250	79	278	373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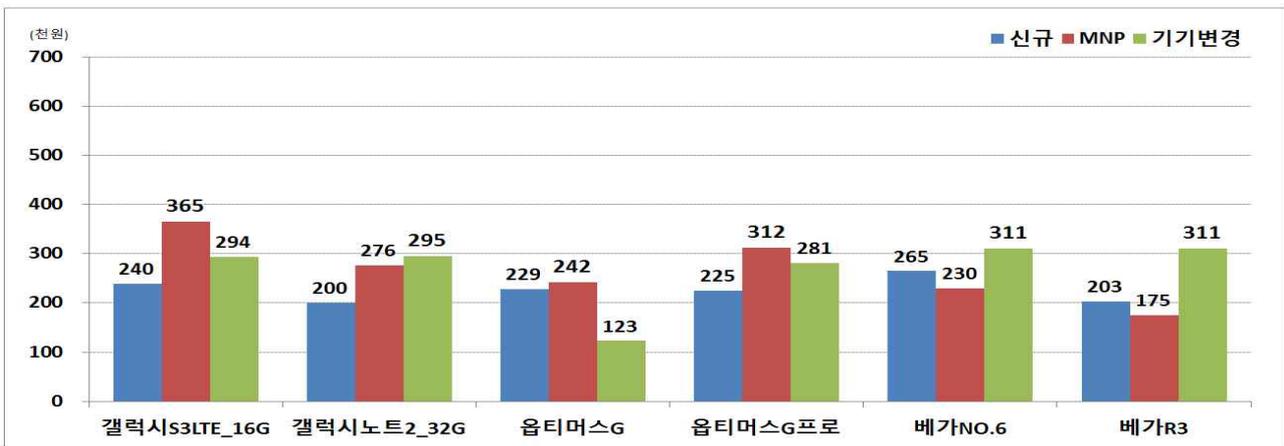
※ 기종별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또한 주요 단말기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높게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갤럭시S3·옵티머스G프로 기종의 경우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 간 차별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가입형태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팻네임	출고가	신규		기기변경
			010신규	MNP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800	240	365	294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990	200	276	295
LG-F180S	옵티머스G	700	229	242	123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68	225	312	281
IM-A860S	베가NO.6	849	265	230	311
IM-A850S	베가R3	905	203	175	311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가입자 간에도 보조금 지원의 가입자 간 차별이 심하였는데, 베가R3의 경우 최대 1,040천원에서 최소 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갤럭시S3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보조율도 40.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팻네임	출고가	보조금			
			평균	보조율	최대	최소
SHV-E210S_16G	갤럭시S3LTE_16G	800	322	40.3	839	0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990	268	27.0	1,030	0
LG-F180S	옵티머스G	700	229	32.8	739	0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68	288	29.7	1,008	0
IM-A860S	베가NO.6	849	254	29.9	889	0
IM-A850S	베가R3	905	205	22.7	1,04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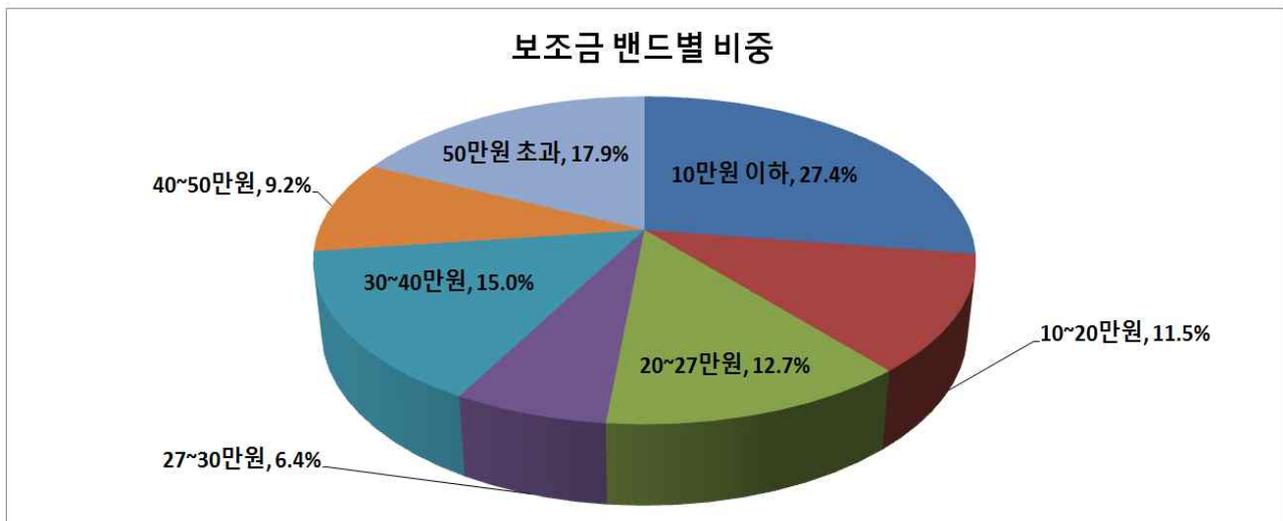
바.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3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42.1%인데 반해 1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27.4%로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였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27만원	27~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합계
가입자	7,316	3,073	3,397	1,700	4,012	2,463	4,784	26,745
비 중	27.4%	11.5%	12.7%	6.4%	15.0%	9.2%	17.9%	100.0%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판단기준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

1)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³⁾은 적법하다고 인정

3) '12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0개월, KT는 21개월, LGU+는 18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3.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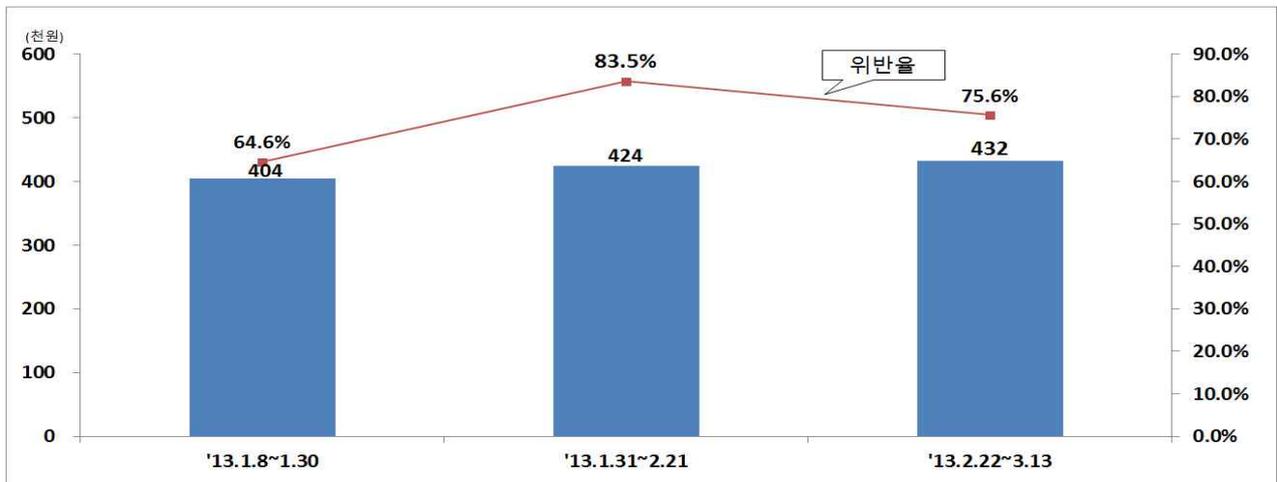
가. 27만원 초과 위반율

조사대상 기간('13.1.8~3.13)의 108,147건 중에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79,849건으로 위반율은 73.8%였으며, 평균 보조금은 420천원이었다.

〈 기간별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 〉

(단위 : 천원, %)

구분	1.8~1.30	1.31~2.21	2.22~3.13	전체
평균보조금	404	424	432	420
위반율	64.6	83.5	75.6	73.8



나. 가입형태별 위반율

조사대상 자료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에는 기존 가입자 이탈방지와 타사업자 번호이동 유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기변경 위반율은 74.9%, 번호이동 위반율은 76.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최대 1,155천원에서 최소 0원까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간 차별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출고가	보조금 수준			위 반 율
		평균	최대	최소	
전 체	918	420	1,155	0	73.8
010신규	829	364	1,129	0	66.6
번호이동	934	471	1,129	0	76.3
기기변경	946	394	1,155	0	74.9

다. 연령대별 위반율

피심인은 연령대별로 70.8~83.6%의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보조금도 모든 연령대에서 27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 연령대별 평균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평균 보조금	439	403	428	441	396	416	436	398	420
위 반 율	83.6	73.7	72.8	75.8	71.4	73.7	75.3	70.8	73.8

라. 주요 단말기별 위반율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제조사 단말기별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그 중 주요 단말기를 분석해 보면, 옵티머스G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499천원, 위반율은 80.0%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갤럭시S3는 평균 보조금 399천원 위반율은 79.5%였으며, 베가R3는 평균 보조금 463천원에 위반율은 70.0%로 주요 제조사 단말기 간에도 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주요 단말기별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건, %)

구 분	출고가	평균 보조금	조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갤럭시S3LTE_16G	908	399	18,601	14,783	79.5
갤럭시노트2_32G	1,089	304	31,530	20,438	64.8
옵티머스G	1,000	499	4,646	3,716	80.0
옵티머스G프로	968	311	2,304	1,549	67.2
베가NO.6	849	293	1,282	787	61.4
베가R3	1,000	463	4,973	3,482	70.0

마.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자료 중 위반건수 79,849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⁸⁾을 살펴보면, 30~40만원대가 전체 대비 25.8%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지급받은 비율도 전체 대비 43.6%로 매우 높은 분포율을 보여주고 있다.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구 분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80 만원	80~90 만원	90~100 만원	100만원 초과	합 계
위반 건수	5,817	20,624	18,566	11,894	7,805	7,427	3,869	2,300	1,547	79,849
분포율	7.3%	25.8%	23.3%	14.9%	9.8%	9.3%	4.8%	2.9%	1.9%	100.0%

4. 과열기간(13.4.22~5.7일)

가. 27만원 초과 위반율

조사대상 기간(13.4.22~5.7)의 26,745건 중에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12,959건으로 위반율⁹⁾은 48.5%이고 위반평균 보조금은 488천원이었으며, 평균 보조금은 297천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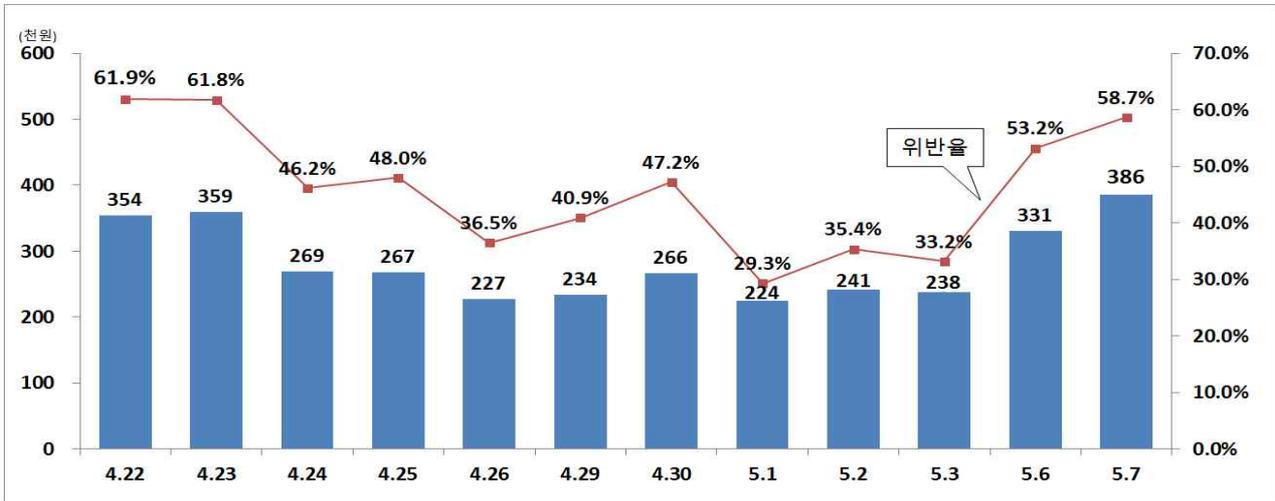
8) 위법성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하는 위반건수에 대한 분포율임

9) 조사대상 기간(12일) 중 SKT의 위반율이 높은 날짜는 2일로 나타남

〈 기간별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 〉

(단위 : 천원, %)

구분	4.22	4.23	4.24	4.25	4.26	4.29	4.30	5.1	5.2	5.3	5.6	5.7	전체
평균보조금	354	359	269	267	227	234	266	224	241	238	331	386	297
위반율	61.9	61.8	46.2	48.0	36.5	40.9	47.2	29.3	35.4	33.2	53.2	58.7	48.5
위반평균보조금	500	501	422	409	500	434	448	436	443	454	509	565	488



나. 가입형태별 위반율

조사대상 자료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과열기간 중에는 번호이동 위반율이 5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최대 1,078천원에서 최소 0원까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간 차별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출고가	보조금 수준			위반율
		평균	최대	최소	
전체	808	297	1,078	0	48.5
010신규	736	270	1,030	0	44.3
번호이동	802	347	1,040	0	57.8
기기변경	875	250	1,078	0	38.5

다. 연령대별 위반율

피심인은 연령대별로 43.7~69.1%의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보조금도 모든 연령대에서 27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 연령대별 평균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평균 보조금	362	282	294	310	276	306	330	310	297
위 반 율	69.1	50.5	46.2	49.2	43.7	50.3	53.6	49.5	48.5

라. 주요 단말기별 위반율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제조사 단말기별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그 중 주요 단말기를 분석해 보면, 갤럭시S3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322천원, 위반율은 57.7%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옵티머스G프로는 평균 보조금 288천원에 위반율은 49.7%였으며, 갤럭시노트2는 평균 보조금 268천원에 위반율은 46.9%로 주요 제조사 단말기 간에도 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주요 단말기별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건, %)

구 분	출고가	평균 보조금	조사건수	위 반 건 수	위 반 율
갤럭시S3LTE_16G	800	322	3,105	1,792	57.7
갤럭시노트2_32G	990	268	5,056	2,373	46.9
옵티머스G	700	229	276	124	44.9
옵티머스G프로	968	288	1,797	894	49.7
베가NO.6	849	254	868	324	37.3
베가R3	905	205	51	24	47.1

마.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자료 중 위반건수 12,959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을 살펴보면, 30~40만원대가 전체 대비 31.0%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지급받은 비율도 전체 대비 36.8%로 높은 분포율을 보여주고 있다.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구 분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80 만원	80~90 만원	90~100 만원	100만원 초과	합 계
위반 건수	1,700	4,012	2,463	1,415	1,061	1,638	394	170	106	12,959
분포율	13.1%	31.0%	19.0%	10.9%	8.2%	12.6%	3.0%	1.3%	0.8%	100.0%

5.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시정조치 명령

1.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과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별표 5] I. 2호),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1,225억 7천만원이다.

나. 기준 과징금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에 대해서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위반율이 73.8%로 현격히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율을 관련매출액의 2%를 적용하며, 과열기간('13.4.22~5.7일)에는 위반율이 48.5%임을 고려하여 1%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신규모집 금지기간에는 259억 6천만원이며, 과열기간에는 20억 9천만원이다.

2. 필수적 가중

최근 3년간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4회('10.9월, '11.9월, '12.12월, '13.3월) 받았으며, 이번 위반행위가 5회째 이므로 3회째부터 10%씩 가산하여 기준 과징금의 30%를 가산한다.

3.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의 과징금은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일)에는 337억 4천만원이며, 과열기간('13.4.22~5.7일)에는 27억 2천만원으로 최종 과징금은 364억 6천만원이다.

VI.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V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 7. 18.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이 경 재 (인)
	부위원장	김 충 식 (인)
	위 원	홍 성 규 (인)
	위 원	김 대 희 (인)
	위 원	양 문 석 (인)